

의안번호	제 32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11월 27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11월 27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
-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 보완

2. 주요내용

-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의 구체적 명시(안 제2조)
- 예우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 명시(안 제3조)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근거 명시(안 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충청북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참전유공자”(이하 “유공자”라 한다)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2조에 따른 유공자로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

사람

2. 도내 소재지를 둔 참전자단체

제4조 중 “모든 도민”을 “충청북도민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예우 및 선양사업)”을 “(예우 및 지원사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복리”를 “복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인정 하는 사항”을 “인정하는 사업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명예수당 지원)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(이하 “명예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명예수당의 지급액, 지급방법,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	<p><u>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률</u>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충청북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
<p>1. <u>참전유공자(이하 “유공자”라 한다)</u>라 함은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</p>	<p>1. “<u>참전유공자</u>”(이하 “<u>유공자</u>”라 한다)란 「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</p>
<p>2. (생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<u>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유공자 및 참전자단체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<u>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4조(도민의 책무) <u>모든 도민은 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(예우 및 선양사업)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복리</u>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</p>	<p>1. 제2조에 따른 유공자로서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</u></p> <p>2. <u>도내 소재지를 둔 참전자단체</u></p> <p>제4조(도민의 책무) <u>충청북도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예우 및 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복지</u>-----</p>
<p>4. <u>기타</u> 유공자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<u>인정</u> 하는 사항</p>	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<u>인정하는 사업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6·25전쟁"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.
2. "참전유공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 - 가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 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 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 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
제5조(등록 및 결정)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

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0. 1. ~ 계속
- 사업대상 : 8,957명(6.25참전유공자 3,338, 월남전참전유공자 5,619)
- 사업내용 :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(월 2만원)에 따른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명예수당 지원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매년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(450~500여명)를 감안 산출

※ ('20) 8,957명 → ('21) 8,500명 → ('22) 8,000명 → ('23) 7,500명 → ('24) 7,000명

나. 추계 결과 : 9,589,68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전광식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	
세 입	2,149,680	2,040,000	1,920,000	1,800,000	1,680,000	9,589,680	
국 비							
도 비	2,149,680	2,040,000	1,920,000	1,800,000	1,680,000	9,589,680	
시군비							
세 출	2,149,680	2,040,000	1,920,000	1,800,000	1,680,000	9,589,680	
명예수당 지원	2,149,680	2,040,000	1,920,000	1,800,000	1,680,000	9,589,680	
재원 조달	2,149,680	2,040,000	1,920,000	1,800,000	1,680,000	9,589,680	
의존 재원	소 계	2,149,680	2,040,000	1,920,000	1,800,000	1,680,000	9,589,680
	보조금	2,149,680	2,040,000	1,920,000	1,800,000	1,680,000	9,589,680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시·군비							
기 타 (민간자부담)							